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〔'22.4.18(월)〕

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(의회운영위원회)

[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]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8. 심영석 의원등 19명

❍ 회 부 일 자 : 2022. 4. 8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.4.18.)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.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심영석 의원)

창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, 보조공학기·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마.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지방자치법 제28조(조례)
- 지방공무원법 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·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)

다. 입법예고(2022. 4. 9 ~ 4. 13) : 제출 의견 없음

5. 주요 세부사항

가. 장애인공무원, 근로지원인,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 용어에 대한 정의 **(안 제2조)**

나.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, 보조공학기기·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원칙, 지원범위, 방법 등을 정함 **(안 제4조~ 제6조)**

다.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, 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함 **(안 제7조)**

라.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고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함 **(안 제8조)**

6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정정연)

❍ 본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편의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,

❍ 조례안은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기본원칙, 지원범위, 지원방법, 전문기관의 운영 등,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, 운영규정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함.

❍ 상위법과 기타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

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근무환경 제공과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·답변 요지 : 기재생략

8. 토론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